

## 제4절 안전도 정보

### 1. 국적항공사의 항공기사고<sup>23)</sup> 및 준사고<sup>24)</sup> 발생 현황

- ❖ 2015년에는 국적항공사의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 발생이 잦아 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2016년은 준사고 2건으로 항공기사고·준사고가 크게 줄었고, 2017년에는 항공기사고·준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

〈표 1-72〉 국적항공사 최근 5년간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사고	3	0	1	0	0	4
준사고	3	1	8	2	0	14
총 계	6	1	9	2	0	18

자료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2. 국내 취항 외국적항공사의 안전도 정보

- ❖ 국내 취항 중인 외국적항공사의 안전도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여 보다 안전한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 안전도 정보 주요내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의 국가별 항공안전평가 결과,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IASA 항공사 안전등급 및 유럽연합(EU)의

23) 항공안전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24) 항공안전법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항공기 준사고란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을 말함.

블랙리스트임.

- ❖ 이와 함께, 외교부에 지정한 여행금지국가(경보단계)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도모하고자 함.

#### 가. ICAO의 국가별 항공안전평가(USOAP-CMA)

- ❖ UN 산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는 항공안전평가(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 USOAP-CMA) 시행을 통해 ICAO 회원국의 조직, 법령, 종사자 자격 및 항공안전 감독체계 등에 대한 국제안전기준 이행실태를 상시로 평가하고 있음.
  - ▶ USOAP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운항, 정비, 종사자 등 3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운항, 감항, 종사자 자격관리, 관제, 공항, 사고조사 등 안전관련 전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 방식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음.
- ❖ USOAP-CMA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는 없으나, 각 국가에서 타국가의 항공안전 수준을 측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 2017년 12월 기준 ICAO 지정 안전우려국은 4개 국가이며, 앙골라('17년 4월), 네팔('17년 7월), 태국('17년 10월), 지부티('17년 11월)가 ICAO 안전우려국에서 제외됨.
  - ▶ 이중 해당 국가의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국가는 태국으로, 우리나라에는 타이항공, 타이에어아시아엑스가 취항하고 있음.

〈표 1-73〉 ICAO 지정 안전우려국(2017. 11. 기준)

구분	해당국가
안전우려국(4개국)	에리트레아, 아이티, 키르기스스탄, 말라위,

주 : () 우리나라 취항 중인 항공사  
 자료 : ICAO 홈페이지

### 나. 미국 FAA의 국가별 항공안전평가(IASA) 등급

- ❖ 국제항공안전평가(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Assessment, IASA)란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이 자국을 운항하는 외국적항공사의 항공당국을 ICAO 국제표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해 1992년에 마련한 항공안전평가 프로그램임.
  - ▶ 항공당국의 조직 및 감독 기능·기술 지침·기술직 공무원의 자격·항공사 등에 대한 증명발급 및 안전감독체계 등이 IASA의 주요 평가기준임.
  - ▶ 평가 결과에 따라 두 종류(1등급·2등급)로 구분하고, 2등급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 국적 항공사와의 공동운항(Code share) 금지, 운항증편 제한 등과 같은 운항제한 조치가 부과됨.
- ❖ 2016년에는 2등급이던 인도네시아가 1등급으로 변경되었으며, 미국에 신규 취항한 케냐는 1등급으로 평가됨.
  - ▶ 2등급 국가의 항공사가 국내에 취항하는 국가는 태국이며, 국내 취항 항공사는 타이항공, 타이에어아시아엑스임.

〈표 1-74〉 FAA 항공안전평가 결과(2017. 2. 기준)

등급	해당국가
1등급 (83개국)	아르헨티나, 아루바,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벨기에, 버뮤다, 볼리비아,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케이맨 제도,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과테말라, 홍콩,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케냐, 쿠웨이트,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몰타, 멕시코, 모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동카리브 국가기구,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대한민국, 루마니아, 러시아,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싱가포르, 남아공, 스페인,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대만, 트리니다드 & 토바고, 터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2등급 (7개국)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큐라소, 가나, 생 마르틴, 태국(타이항공, 타이에어아시아엑스), 우루과이

주 : () 우리나라 취항 중인 항공사  
 자료 : FAA 홈페이지

다. 유럽연합(EU) 블랙리스트

- ❖ 유럽연합(EU) 블랙리스트는 EU 소속 국가를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안전성이 결여되는 항공사는 EU 지역 운항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Annex A, Annex B의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음.

\* Annex A에 해당하는 항공사의 소속 항공기들은 EU 지역 내 운항 금지  
 \* Annex B에 해당하는 항공사는 일부 기종에 대해서만 EU 지역 내 운항 허가

〈표 1-75〉 유럽연합(EU) 블랙리스트 Annex A(2017. 11. 기준)

구분	블랙리스트 항공사
Annex A (22개국, 179개 항공사)	베네수엘라(아비오르항공), 수리남(블루윙항공), 이란(이란아스맘항공), 이라크(이라키항공), 나이지리아(메드뷰항공), 짐바브웨(짐바브웨항공), 아프가니스탄 국적사(6개사), 앙골라 국적사(13개사, TAAG 앙골라항공은 Annex B 해당), 콩고 국적사(8개사), 콩고민주공화국 국적사(21개사), 지부티 국적사(1개사), 적도기니 국적사(2개사), 에리트레아 국적사(2개사), 가봉(6개사, Afrijet과 SN2AG는 Annex B 해당), 인도네시아 국적사(55개사,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에어패스트, 익스프레스 트랜스포타시 안타베누아, 인도네시아에어아시아, 씨티링크, 라이온에어, 바틱항공 등 7개 항공사 제외), 키르기스스탄 국적사(13개사), 라이베리아 국적사, 리비아 국적사(7개사), 네팔 국적사(18개사), 상투메프린시페 국적사(2개사), 시에라리온 국적사(7개사), 수단 국적사(12개사)

자료 : EU 홈페이지

〈표 1-76〉 유럽연합(EU) 블랙리스트 Annex B(2017. 11. 기준)

구분	항공사	운항제한 기종	
Annex B (5개국, 6개 항공사)	북한	Air Koryo TU-204를 제외한 모든 기종	
	가봉	Afrijet Business Service	Falcon 50, Falcon 900을 제외한 모든 기종
		Nouvelle Air Affaires Gabon (SN2AG)	CL-601, HS-125-800을 제외한 모든 기종
	이란	Iran Air	F100, B747을 제외한 모든 기종
	코모로스	Air Service Comores	LET410 UVP를 제외한 모든 기종
	앙골라	TAAG Angloa Airlines	B737-700, B777-200, B777-300, B777-300ER을 제외한 모든 기종

자료 : EU 홈페이지

라. 항공안전등급 현황(ICAO, FAA, EU)

- ❖ ICAO 항공안전평가, FAA의 항공안전평가, EU의 블랙리스트 결과는 <표 1-77>과 같음.
  - ▶ FAA 항공안전평가 2등급 항공사 중 국내 취항하는 항공사가 포함된 국가는 태국이며, 타이항공, 타이에어아시아엑스가 취항 중에 있음.
  - ▶ 국내 취항 중인 항공사 중 ICAO 안전우려국을 국적으로 하거나, EU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항공사는 없음.
  - EU 블랙리스트 Annex A로 인도네시아의 55개 항공사가 지정되어 있으나, 국내 취항 중인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은 블랙리스트에 해당되지 않음.

<표 1-77> 항공안전등급 현황(2017. 12. 기준)

국 가	ICAO우려국 '17. 11. 기준 (4개국)	FAA 2등급 '17. 2. 기준 (7개국)	EU블랙리스트 '17. 11. 기준 (24개국)	비 고 (EU 블랙리스트 상세내역)
가나		●		
가봉			◎/△	6개사(AfriJet 운영 Falcon 50, Falcon 900을 제외한모든 기종, SN2AG 운영 CL-601, HS-125-800을 제외한모든 기종)
나이지리아			◎	1개사
네팔			◎	18개사
라이베리아			◎	
리비아			◎	7개사
말라위	○			
바베이도스		●		
방글라데시		●		
베네수엘라			◎	1개사
북한			△	1개사(고려항공 운영 TU-204 제외)
상투메프린시페			◎	2개사
생 마르틴		●		
수단			◎	12개사
수리남			◎	1개사
시에라리온			◎	7개사

국 가	ICAO우려국 '17. 11. 기준 (4개국)	FAA 2등급 '17. 2. 기준 (7개국)	EU블랙리스트 '17. 11. 기준 (24개국)	비 고 (EU 블랙리스트 상세내역)
아이티	○			
아프가니스탄			◎	6개사
앙골라			◎/△	13개사(TAAG항공의B737-700, B777-200, B777-300, B777-300ER을 제외한모든기종)
에리트레아	○		◎	2개사
우루과이		●		
이라크			◎	1개사
이란			◎	1개사
적도기니			◎	2개사
지부티			◎	1개사
짐바브웨			◎	1개사
코모로스			△	1개사(에어서비스항공 운영 LET410 UVP 제외)
콩고			◎	8개사
콩고민주공화국			◎	21개사
큐라소		●		
키르기스스탄	○		◎	13개사
태국		●		태국항공, 타이에어아시아엑스 국내 취항 중
인도네시아			◎	55개사(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에어패스트, 익스프레스트란스포타시안 타베누아, 인도네시아에어아시아, 씨티링크, 라이온에어, 바틱항공 등 7개항공사제외)*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국내 취항 중

주 : ◎ EU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항공사의 모든 기종에 대해 EU운항 제한  
 △ EU내 제한적 운항 허용(특정 항공사의 일부기종은 운항 허용)

### 3. 외교부 여행금지국가

- ❖ 외교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고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여행금지국을 지정하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고 있으며, 2018년 2월 기준으로 7개 국가가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되어 있음.

####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음.

- ▶ 아프가니스탄 : 2007.8.7 ~ 2018.7.31.
  -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 2015.12.1 ~ 2018.7.31.
  - ▶ 리비아 : 2014.8.4 ~ 2018.7.31.
  - ▶ 시리아 : 2011.8.20 ~ 2018.7.31.
  - ▶ 예멘 : 2011.6.28 ~ 2018.7.31.
  - ▶ 이라크 : 2007.8.7 ~ 2018.7.31.
  - ▶ 소말리아 : 2007.8.7 ~ 2018.7.31.
- ❖ 여행자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여행안전정보 제공에 초점을 둔 '여행정보'와 달리 외교부는 '특별여행정보'를 발령하여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여행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 특별여행정보 발령 요건은 해당국가의 치안이 급속히 불안정해지거나, 전염

병이 창궐하거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발령하며, 특별여행경보 발령에 따라 여행경보의 발령 단계가 조정되지는 않음.

- ▶ 특별여행경보의 기본 발령 기간은 1주일이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됨.

〈표 1-78〉 특별여행경보 발령현황(2018. 2. 기준)

국가	특별여행경보 단계	비고
이스라엘	특별여행주의보	서안지구(West Bank)
	특별여행경보	가자지구
필리핀	특별여행주의보	민다나오섬(다바오/카가얀데오로시)
	특별여행경보	민다나오섬(다바오/카가얀데오로시 제외)
레바논	특별여행경보	트리폴리 이북, 아르살, 헤르멜 지역, 북부 베카 지역(브리텔 이북, 바알베크 포함)
이집트	특별여행경보	시나이반도 지역
남수단	특별여행경보	전지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특별여행경보	전지역
카메룬	특별여행경보	최북부(엑스트림-노르드(EXTREM-NORD)지역)
파키스탄	특별여행경보	발루치스탄 주

주1 : 특별여행경보 1단계란 특별여행주의보라고도 하며,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철수권고)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함. 해외체류자는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하여야 하며, 방문 예정자는 가급적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야 함.

주2 : 특별여행경보 2단계란 기존의 여행경보단계와는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즉시대피'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함. 해당 지역 체류자는 즉시 대피하고, 방문 예정자의 방문이 금지됨.

자료 : 외교부 홈페이지